

##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4년 4월 4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 
관한 조례안

2. 발 의 자 : 조 인 호 의원

3. 개정이유

- 우리군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실종자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시행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예방·지원사업 및 재정지원(안 제5조,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·운영(안 제7조)

#### 5. 관련법령 :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4. 4. 4. ~ 2024. 4. 9.

#### 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##### 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  
(전화: 061-550-5934, FAX: 061-550-5907)

##### 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#### 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 
조례안 1부. 끝.

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 소		

## 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「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의  
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

##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실종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

2. “드론”이란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, 복귀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실종자 현황 및 실태
2.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
3. 실종자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
4.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예방·지원 사업)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2.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
3.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
4.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재정 지원)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·운영)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완도경찰서, 완도교육지원청,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게 「완도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의 책무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, 조속한 발견·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
2.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
3.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·교육 및 홍보
4.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
5.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
6.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
7.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
3.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
4.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

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·조정한다.